##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90 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송기헌·강훈식·김영배

김 윤 · 김태년 · 문진석

박 정·백혜련·염태영

위성곤 • 이기헌 • 주철현

허 영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, 부산,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, 위탁병원으로 지정된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

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2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 ·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4조(진료) ① (생 략)	제34조(진료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	②		
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			
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<u>o</u> ]		
<후단 신설>	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,		
	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대통령		
	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		
	도록 위탁하여야 한다.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